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근거 규정 유효기간 연장〉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5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3. 20.
3. 회부연월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선 지중화 사업은 감전 등 전기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 개선, 보행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이와 관련, 국회는 2021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며 지중화사업의 소요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2025년 3월 현재도 매우 저조하며, 특히 수도권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매우 큼. 제도 도입시보다 관련 지표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은 심대하다고 할 것임.

이에 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부칙 제2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u>2025년</u>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 <u>2030년</u> ----- -----.

현행법 제72조의2 제1항과 제2항¹⁾은 배전선로 등 전선로의 지중이설 비용에 대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한전)가 그 비용의 일부

1)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 환경 개선 및 재난 상황 대비 등을 위해 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한전이 부담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가 어려워 지중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같은 조 제3항²⁾ 및 제49조 제11호가 신설³⁾되었음.

다만, 개정 당시 전력기금의 재원 상황과 함께 지중이설을 위한 예산 소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⁴⁾로 부칙에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적 규정으로 신설하였음.

2) 「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3) 법률 제18280호(2021.6.15. 시행)

4)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 10. (생략)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사업 기간을 2025년까지로 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전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의 20%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음.

당초 학생들의 통학 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통행로 인근의 가공 배전선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대상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2022년 사업부터 도시재생·전통시장, 2023년 사업부터 노후산단 구역 내 가공 배전선로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였음.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1,900억원의 전력기금 예산을 투입하여 총 289건, 459c-km의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으로 이설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전력기금으로 지자체의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지원하지 않게 되므로, 지자체의 비용부담 증가에 따라 다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비용을 전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여 정부가 지중화 사업을 전력기금으로 계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전선로 지중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현재 ① 당초 목표 대비 학교 인근 통학로 등의 전선로 지중화율이 아직 현저히 낮고⁵⁾, ②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중화 진행 정도가 전국 평균 대비 미진⁶⁾하여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가 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계속해서 지원하면 지역별 지중화율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기존의 논의과정에서 5년의 유효기간을 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기한을 단순히 폐지하기보다는 개정안과 같이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일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배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자체의 송전선로 건설 관련 인허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전력망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송전망 건설에는 지자체의 인허

5) 당초 사업 편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적으로 학교 주변 지중화율을 OECD 수준인 33%로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 800c-km 지중화를 시행하려 했으나 사업 대상 확장 등으로 인해 2025년까지 약 378c-km의 배전선로를 지중화하였음.

6) 예를 들어, -2024년 12월 기준, 지중화율이 전국 평균(21.7%) 보다 낮은 8개 광역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모두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43.3%) 보다 낮았음.

가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국비 지원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1